

서울고등법원 2024. 4. 4 선고 2023나202354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4. 4 선고 2023나2023546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5. 31 선고 2021가합10284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

피고, 항소인 1.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

담당변호사 이정근

2. 주식회사 D

3. E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영

변론종결 2024. 3. 7.

판결선고 2024. 4. 4.

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5. 31. 선고 2021가합102841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, E에 대한 청구 부분(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)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 주식회사 D, E은 [별지4] ‘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도면’ 기재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 부분 1,291㎡와 같은 도면 기재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나’ 부분 6,883㎡를 각 인도하라.
2.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의 토지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(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D, E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)
원고에게,
가. 피고 C 주식회사는,
1) 제1심판결 [별지3] ‘이 사건 건축물 목록’ 기재 각 건물 및 저수조를 각 철거하고, 2) 98,882,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7.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3) 2022. 6. 7.부터 위 1)항 기재 각 건물 및 저수조의 철거일까지 월 4,775,3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나.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.
2. 항소취지
가. 피고 C 주식회사

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나. 피고 주식회사 D, E

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, E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- 제1심판결의 [별지4]를 이 판결의 [별지4]로 교체한다.
- 제1심판결 제3면 제18, 19행의 “[별지4] 도면 기재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 부분 8,144㎡”를 “[별지4] 도면 기재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 부분 1,291㎡와 같은 도면 기재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나’ 부분 6,883㎡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제2행부터 설시된 “[인정근거]”에 “이 법원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”를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『피고 C은,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할 당시 그 부지인 이 사건 1차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, 이후 이 사건 1차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서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, 피고 C은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전전양도 받아

취득하였거나, F이 취득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1997. 3. 20. 이 사건 1차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7. 12. 11. AV공제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, 그 때부터 2005. 12. 16. 피고 C이 경매로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1차 사업부지의 소유권자는 AV공제조합이었다. 그런데 F이 1997. 12. 11. 이 사건 1차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AV공제조합에게 이전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 착공한 것은 1997. 10. 21.경이고, 그로부터 불과 50여일 만인 1997. 12. 11. 이 사건 1차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AV공제조합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 결국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15면 제19행의 “이는”을 “위 소송은 이 사건 1차 사업부지에 관한 공사대금이 주된 소송물이었고,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16면 제9행 다음에 “위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서증들과 이 법원 증인 AW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D, E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”를 추가한다.

2. 결론

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피고 D,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(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)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,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심 담, 판사 성수제, 판사 김복형

별지